#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07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759호)	박홍배	2024. 9.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416호)	김소희	2024. 9. 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406호)	박해철	2024. 11. 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11.28.)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에 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 3 신설).
-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제33조의2의 제목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을 "제품·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용기에 표

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 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 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생 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	
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u>.</u>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	
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
	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
	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이 가
	능한 경우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	<u>3</u> . <u>환경부장관</u>
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u>와 환경부장관</u> 과 회수·재활	
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 재료 • 용기 <u>3</u>. (생 략)

③ ~ ⑧ (생 략)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 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u>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u>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확인) ① -----

제품 • 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

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환경부장 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 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 에 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 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 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신 설>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 용기의 구매촉진) (생 략)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

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재생원료의 사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u> 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 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 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 생원료를 그 제품 · 용기에 사 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재 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용기의 구매촉진) (현행 제33조 의3과 같음)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
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 • 용기에 사용하여야 하
<u>는 자</u>

② ~ ⑥ (현행과 같음)